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요원 채용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e-mail			
최종 학력			
직업	과거 경력		
	현재 직업		
통계조사 경험		<input type="radio"/>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 <input type="radio"/> 2014년 사업체조사() <input type="radio"/> 기타 통계조사 ()회 <input type="radio"/> 2013년 사업체조사() <input type="radio"/> 통계조사 경험 없음 ()	
컴퓨터 활용여부	<input type="radio"/> 상 <input type="radio"/> 중 <input type="radio"/> 하	자격증 종류()	
조사시 이용교통수단	<input type="radio"/> 자동차 <input type="radio"/> 자전거 <input type="radio"/> 도보 <input type="radio"/> 기타()		
지원 동기			

위와 같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요원을 신청합니다.

2015. 3. .

신청자 : 서명(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요원 신청자 등록명부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과거 참여 통계조사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주1) 직업 : 1.가정주부 2.통리반장 또는 세마을지도자 3.대학생 4.부녀회원 5.퇴직공무원 6.무직 7.기타(구체적으로 기재)
 주2) 과거 참여 통계조사명 : 1.인구주택총조사 2.기타통계조사 3. 없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요원 채용자 명부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시도		자치구		성별	연령	학력	채용구분	비고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동	매 중 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비고 : ○○월○○일 중도포기, ○○월○○일 대체(○○○) 등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요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도		자치구		전 화 번 호 (핸드폰)	발급일	발급사유	비고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동	매 중 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주1) 발급사유 : 신규, 재발급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요원 근로계약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 실시에 따라 조사요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권자를 “서대문구청장”이라 칭하고 피고용자를 “조사관리자”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확인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과 “조사관리자”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내용) “조사관리자”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확인 업무 중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서대문구 담당공무원 업무보조
- 자체심사관련 업무보조
- 제출자료 작성
- 조사원 관리업무 보조
- 기타 조사지원 관련업무

제3조 (채용기간) “조사관리자”의 채용기간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확인 실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채용기간 : '15. 3. 16. ~ 3. 27 (10일)
 - 조사관리 : '15. 3. 16. ~ 3. 20.
 - 심사업무 : '15. 3. 23. ~ 3. 25.
 - 정리제출 : '15. 3. 26. ~ 3. 27.
- 근무일수 : 10일 (토·일요일 제외, 유급휴일수당 1일 산정)
- ※ 채용일수에는 유급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일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제4조(산재보험 가입) “서대문구청장”은 “조사관리자”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료는 “서대문구청장”이 납부한다.

제5조 (임금)

- ① “조사관리자”의 세금 공제전 1일 임금은 51,030원(일금 오만원천삼십원)으로 한다.
- ② 임금지급 방법은 조사 관리자 담당 업무가 완료된 후 해당분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의무 및 변상책임)

- ① “조사관리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② “조사관리자”는 채용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서대문구청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서대문구청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 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해지) “조사관리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대문구청장”은 “조사관리자”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서대문구청장”과 “조사관리자”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2015. 3. .

(갑) 채용권자 : 서대문구청장
문 석 진 ㉠

(을) 피채용자(조사요원)
성 명 : 서명(인)
생년월일 :
주소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조사요원 도급계약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실시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서대문구청장”과 피고용자를 “조사원”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확인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과 “조사원”이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내용) “조사원”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 업무 중에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경계 확인이 필요한 조사구 중점 파악
- 오피스텔, 시설조사구 여부 파악
- 조사구 변동내역 현황표 작성
- 대단위 택지지구 확인 및 보완

제3조 (계약기간)

① “조사원”의 계약기간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실시기간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육 : 조사시작일 오전 (2015. 3. 16.)
- 조사구 적합성 조사 : **5일 (2015. 3. 16. ~ 3. 20.)**

② “서대문구청장”은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 지침서 교육, 업무진도 파악, 전달사항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조사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보험 가입) “조사원”은 “서대문구청장”과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 (도급금액)

- ① “서대문구청장”과 “조사원”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수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이므로 무급·유급 휴가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 ② “조사원”의 도급금액은 제2조의 “서대문구청장”이 지정한 조사업무를 기간 내에 완료하였을 경우 세금공제전 243,550원(일금이십사만삼천오백오십원)을 지급한다.
- ③ “조사원”은 조사구적합성 현지확인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변동내역 현황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대문구청장”은 “조사원”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지도(기본도 등)와 비교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인정된 경우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입금을 “조사원”에게 지급한다. 또한, “조사원”이 제출한 자료의 심사 과정에서 “서대문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조사원”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④ 임금 지급방법은 조사완료 후 “서대문구청장”이 “조사원”의 조사 내용을 심사 완료 후 해당분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중도포기자의 도급금액) “조사원”이 채용기간 중 조사 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도급금액을 다음 기준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 ① 교육(조사 시작일 오전) 종료 후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조사의 완료된 실적에 따라 도급 금액의 70%를 지급한다.

③ 중도 포기 발생으로 인하여 인수를 받아 자료입력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조사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할 수 있다.

② “조사원”은 채용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서대문구청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서대문구청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보상금) “조사원”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를 미완성시 지체보상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해지) “서대문구청장”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
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대문구청장”은 “조사원”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서대문구청장”과 “조사원”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2015. 3. .

(갑) 계약권자 : 서대문구청장
문 석 진 (인)

(을) 도급수급자 (조사원)
성 명 : 서명(인)
생년월일 :
주소 :

조사요원 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의 조사(관
리)요원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도중 포기하지 않고, 조사가 완
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
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39조(벌칙)의 규정에 따른 어떠한 처
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15년 3월 일

서약자 서명(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조사요원 출근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조사요원 구분 :

입	월	화	수	목	금	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확인	확인	확인	확인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3월 15일	3월 15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 조사기간 :

※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확인자가 됨